

	강사료지급규정	규정번호	3-2-1
		제정일자	1999.08.23.
		개정일자	2019.08.01.
		개정차수	12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강사료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강사, 산업체겸임교원, 객원교원의 강사료 및 전임교원 초과강사료를 대상으로 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강사료란 학기 중 개설되어 있는 정규 과목의 강의에 대해 지급되는 강사료를 말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.

1. 보통강의: 학기 중 정규강의 시간표상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의 강의(실험실습포함)
2. 임상실습 및 실습보조 강의: 현장실습지도 및 실습보조에 의한 강의
3. 초과강의: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초과하는 강의

제4조(강사료 책정) 강사료는 대학실정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.

제5조(강사료 지급 기준액) 강사료는 [별표]에 의해 지급한다.

제6조(강사료 지급 특례) 실질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시간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강사료 지급기일) 강사료는 주당 시간을 계산하여 4주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 년 8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 년 11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8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